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9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박성훈·김기현·조은희

백종헌 • 고동진 • 임이자

김대식 · 이헌승 · 이상휘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시설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끊임없이 들어서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법률 제 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발전"을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 및 니코틴"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 제1조(목적) | | |
|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 | | | |
| 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u>건전한</u> | 건전한 | | |
| <u>발전</u>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 | |
|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 | | |
| 다.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u> 을 | 1연초(煙草) 및 | | |
|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 | <u> </u> | | |
| 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 | | |
|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 | | | |
| 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 | | |
| 것을 말한다. |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 |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 | |
|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 | | |
|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과</u> 담배 | <u>연초와</u> | | |
| 는 몰수한다. | <u>.</u>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